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25호서식]

긴급임시조치 결정

제 0000-000000 호 0000. 00. 00.

행위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직 업			
	주 거			
변 호 인				

위 사람에 대한 ○○○○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함

[□]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
[□]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[□]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
피해자	성 명	
	주 거	
	직 장	
긴급임시조치 결정근거	□ 피해자 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□ 사법경찰관 직권	
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	일시 : 장소 :	
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		

○○

경○ ○ ○ ○